

이혼 남성 및 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임 용 빈*

최근 동거기간이 긴 중고령층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당사자의 고용률은 남녀 불문하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혼 당사자는 유배우자에 비해서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근로시간은 길고, 임금수준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혼 남성은 최근 유배우자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혼 여성의 노동시장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패널 데이터를 통해 이혼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성 가구주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지만 여성 가구주는 소득 증가보다 식료품, 의료비 등의 지출 증가가 눈에 띈다. 이혼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혼 가구의 실태를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기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문을 닫는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0년 1월 가정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전체의 26%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40%까지 증가하였다. 이 중 대부분의 원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었다.

과거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이혼 가정이 생겨났고 현재도 경제위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이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이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 이혼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ybim@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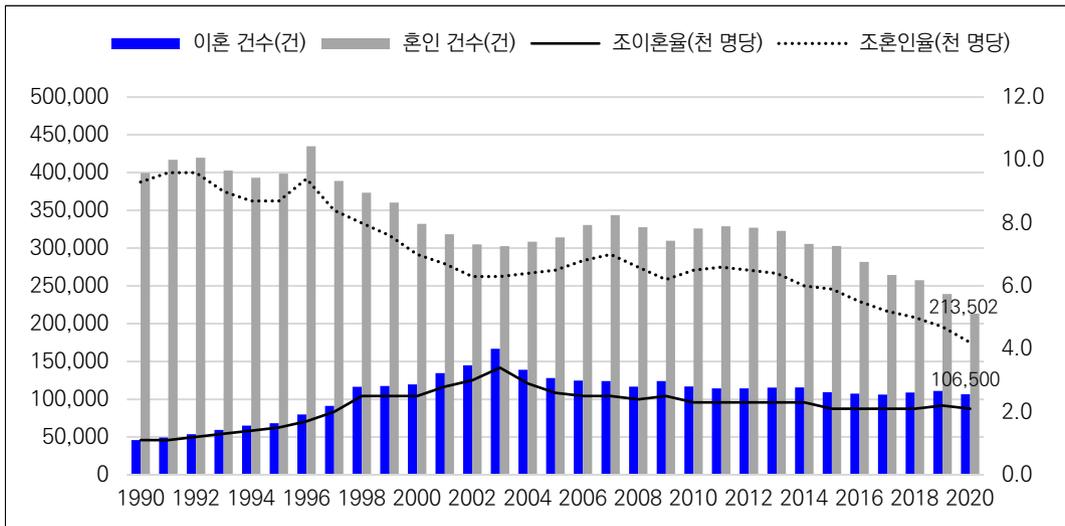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인구동향 중 이혼과 관련된 행정 DB,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이혼 당사자의 노동시장 상황과 소득, 지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혼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혼 남성 및 여성의 고용동향, 근로안전성, 근로조건을 배우자가 있는 남성 및 여성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이혼 진입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를 성별, 이혼 당시 가구의 소득형태별로 살펴보았다.

II. 이혼 남성 및 여성 현황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990년대 초 10만 건 이하,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이혼 수)은 2% 미만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조이혼율이 1997년 2.0%에서 1998년 2.5%로 상승하는 등 점차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조이혼율은 2004년 3.4%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2019년 2.2%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2020년에는 106,500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2019년 110,831건보다 4,331건 감소한 수치였는데(조이혼율 2.2%→2.1%),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이혼 및 결혼 건수, 조이혼율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인구 천 명당))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10년간 이혼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혼인기간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기준 혼인기간이 4년 이하인 이혼 건수는 30,689건(26.9%)이었으나 2020년에는 21,093건(19.8%)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에서 혼인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짧은 동거기간을 가진 부부의 이혼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21년에서 35년 사이로 비교적 장기간 동거했던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11년 22,511건(19.7%)에서 2020년 28,260건(26.5%)으로 증가하였다. 혼인기간이 36년을 넘어서는 부부의 이혼까지 합하면 전체 이혼 건수의 35%를 차지한다. 이혼 부부의 연령대는 2009년까지 30대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부터 점차 4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료 DB¹⁾를 통해 이혼 당시 남성과 여성의 직업상태를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인 이혼 부부가 동거기간과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다. 4년 이하의 동거기간을 가진 맞벌이 이혼 부부는 2011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3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동거기간이 20년이 지난 맞벌이 이혼 부부의 비중도 24%에서 45%로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 부부 중 외벌이의 비중은 동거기간이 길거나 짧은 경우 모두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미취업자(직업불명, 무응답 포함)인 이혼 부부 비중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1〉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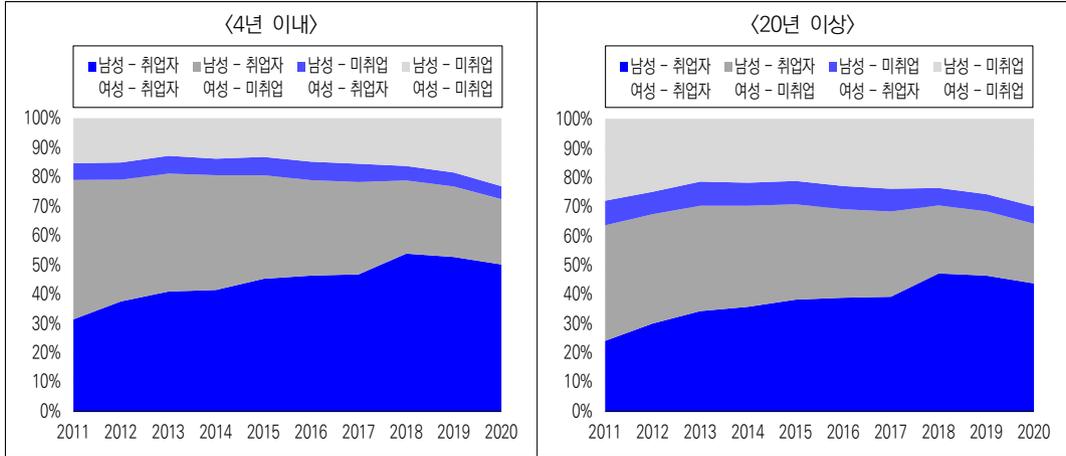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0~4년	30,689 (26.9)	27,299 (23.7)	24,666 (22.6)	23,749 (22.4)	23,291 (21.0)	21,093 (19.8)
5~10년	25,220 (22.1)	24,938 (21.6)	24,266 (22.2)	24,149 (22.8)	23,505 (21.2)	21,893 (20.6)
11~20년	32,992 (28.9)	33,871 (29.4)	30,649 (28.1)	27,831 (26.2)	28,399 (25.6)	26,647 (25.0)
21~35년	22,511 (19.7)	25,583 (22.2)	25,323 (23.2)	24,761 (23.4)	28,080 (25.3)	28,260 (26.5)
36년 이상	2,872 (2.5)	3,601 (3.1)	4,249 (3.9)	5,542 (5.2)	7,556 (6.8)	8,607 (8.1)
전 체	114,284	115,292	109,153	106,032	110,831	106,5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이혼 행정자료 DB는 법원에서 작성된 이혼신고서식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직업 및 학력은 이혼 당시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신고 당일의 학력, 직업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통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동거기간별, 이혼 당사자의 취업자 여부별 이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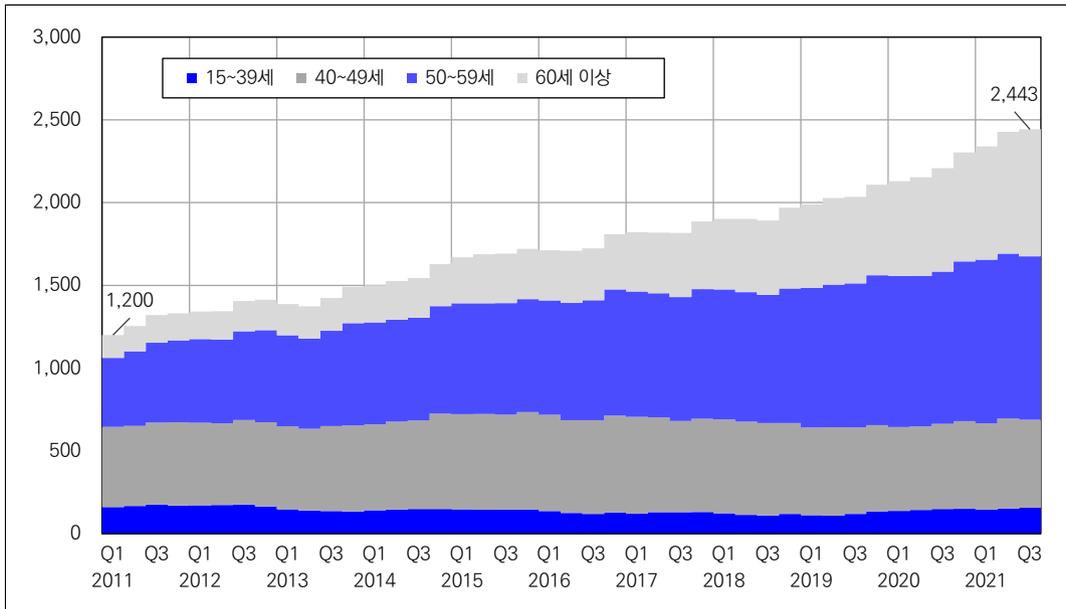
(단위 : %)



주 : 미취업자에는 학생, 무직, 가사, 불명이 포함되며, 신고인의 왜곡신고 및 기입 오류 등으로 인한 정확한 직업분류가 어려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연령대별 이혼상태의 생산가능인구 추이(분기별 평균)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1. 미혼', '2. 유배우자', '3. 사별', '4. 이혼'의 4가지로 물어보고 있는데,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혼상태의 생산가능인구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혼상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3분기 평균 244.3만 명(여성 131만 명, 남성 113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40세 미만의 이혼 당사자는 2011년 3분기 17만 5천 명에서 2021년 3분기 15만 7천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0대의 경우 도 같은 시기 50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50대 이상 이혼 당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50대는 48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60세 이상은 17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앞서 과거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에서 이혼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고, 현재는 이혼 가구가 비교적 혼인기간이 긴 중고령층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의 연령대 구성이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Ⅲ. 이혼 남성 및 여성의 노동시장 특징

1.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된 고용률 감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50세를 전후로 하여 청장년층(30~49세)과 중고령층(50~64세)을 나누어 최근 5년 사이의 이혼 여성 및 남성의 고용률 변화를 유배우자 남성, 여성과 비교하였다. 유배우자 남성이 이혼 남성보다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청장년층의 경우 이혼 남성의 고용률은 감소하였고 중고령층은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이혼 여성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이혼 여성의 고용률은 세대에 따라 4~6% 감소하고 있다.

중고령층 남성을 제외하고 이혼 당사자의 고용률은 모두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그림 4

〈표 2〉 세대별, 이혼 여부별 여성 및 남성의 고용률

(단위: %, %p)

	청장년층(30~49세)			중고령층(50~64세)		
	2016 1~11월	2021 1~11월	증감	2016 1~11월	2021 1~11월	증감
유배우자 남성	96.1	95.6	-0.5	85.3	84.6	-0.7
이혼 남성	86.5	84.6	-1.9	70.5	71.3	0.8
유배우자 여성	58.3	58.8	0.4	56.3	58.7	2.4
이혼 여성	76.9	73.1	-3.7	69.7	63.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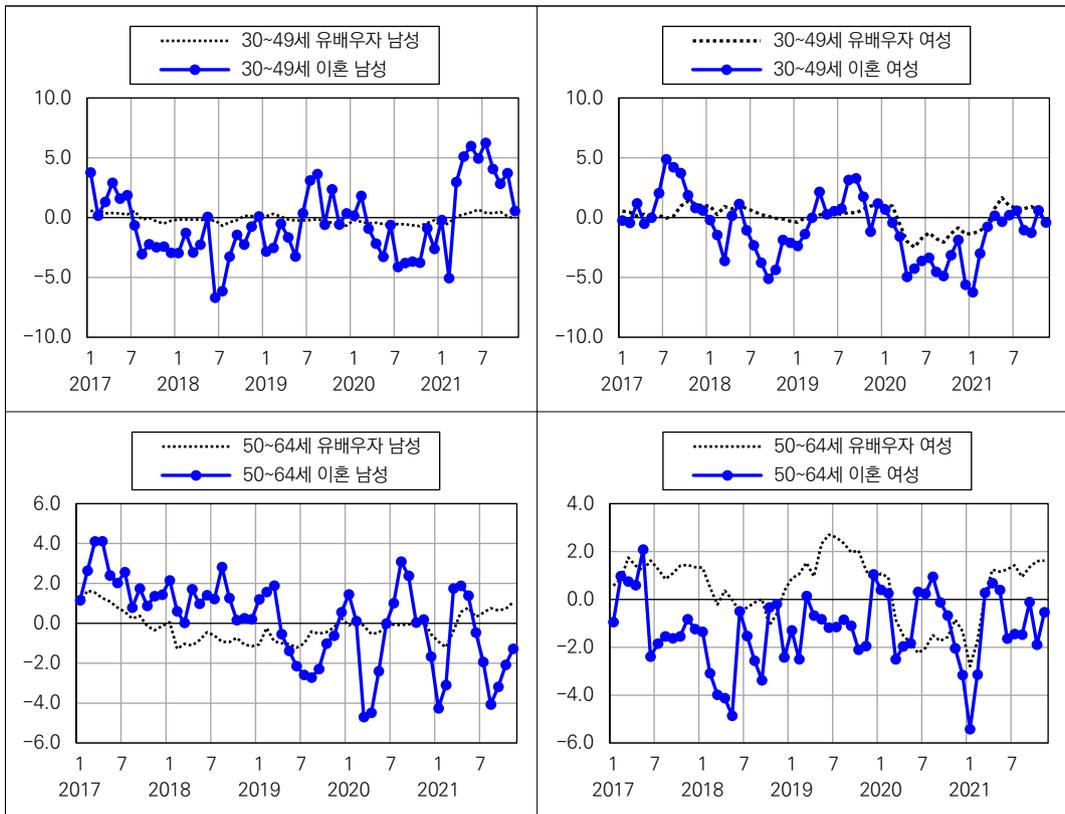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조). 안정적인 고용률 흐름을 보여주는 유배우자 남성에 비해서 30~40대 이혼 남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들어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 이후 성장세를 잃어가고 있다. 50~64세 남성은 2019년 상반기 까지 유배우자 남성보다 고용상황이 좋았지만 2019년 하반기 들어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 여성의 경우 세대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었다. 30~40대 이혼 여성은 2017년까지 유배우자 여성보다 높은 고용률 증가가 나타났으나 2018년 들어 고용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늦어지고 있다. 50~65세 이혼 여성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이후 고용률 감소폭이 둔화되는 등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듯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크게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유배우자에 비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림 4] 세대별, 이혼 여부별 여성 및 남성의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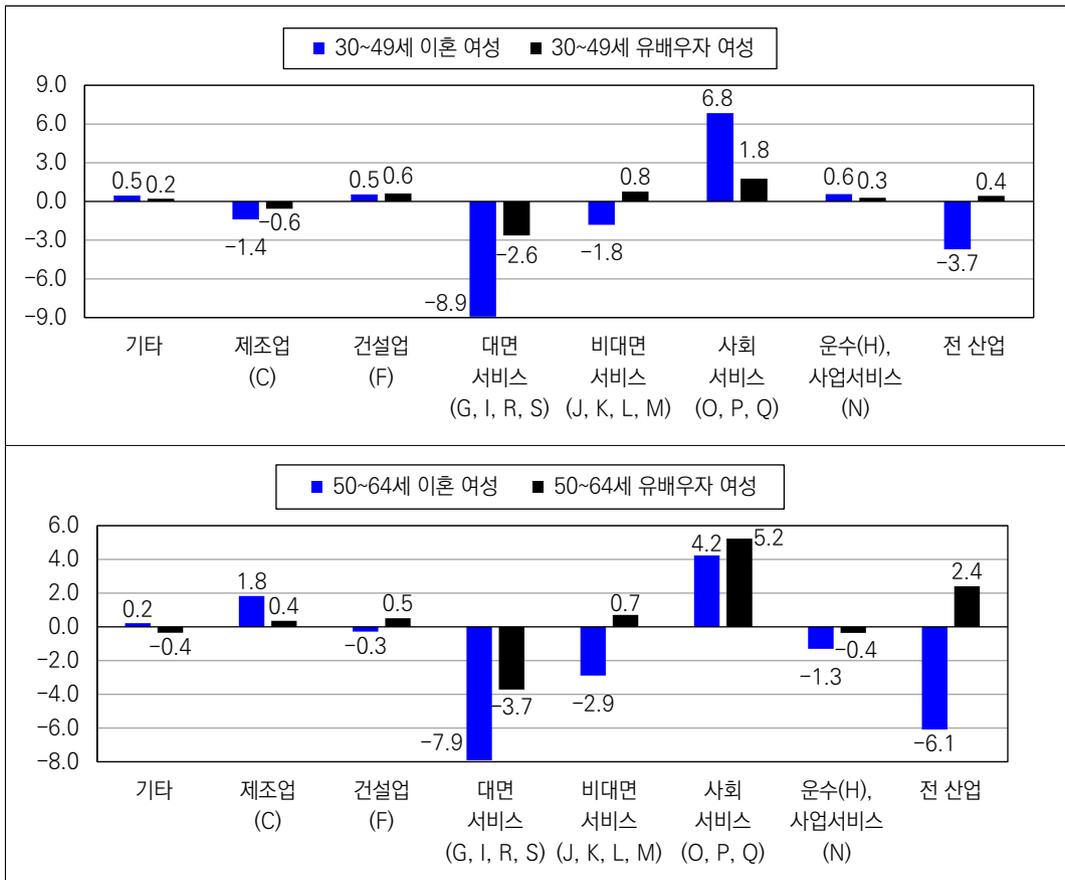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이혼 여성의 고용률 감소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5 참조). 2016년 이후 30~40대 이혼 여성의 고용률은 3.7%p 감소했는데, 도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8.9%p 감소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그 외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비대면서비스 성격이 짙은 업종에서 1.8%p, 제조업에서 1.4%p 감소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재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분야에서 고용률이 6.8%p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률 감소를 막지는 못하였다.

50~64세의 이혼 여성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업에서 4.2%p 증가했고 30~40대 이혼 여성과 달리 제조업에서 1.8%p만큼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대면서비스업에서 7.9%p, 비대면서비스업에서 2.9%p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6.1%p 감소하였다.

[그림 5] 이혼 여부별 여성의 고용률 증감(2016~21)에 영향을 준 업종

(단위: %p, 1~11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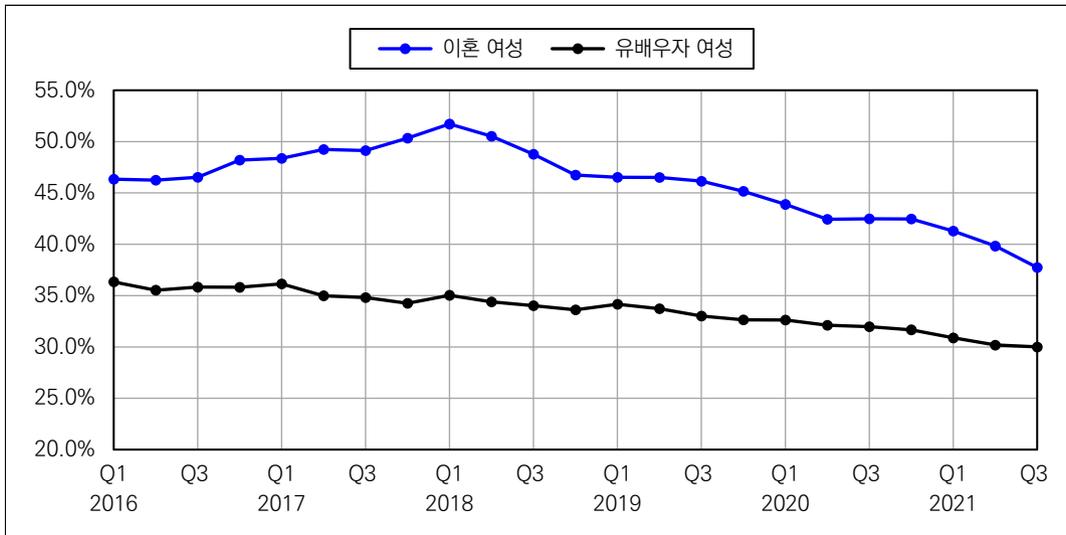


주: [(현재 시점 산업별 취업자÷현재 인구수)×100] - [(전년도 비교 시점 산업별 취업자÷현재 인구수)×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유배우자 남성은 업종별로 고용률 증감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 남성은 세대별로 고용률 증감에 영향을 준 업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0~40대 이혼 남성의 고용률 감소(-1.9%p)는 제조업(-7.3%p)에서 주요하게 발생하고 있고, 50~64세 이혼 남성의 고용률 증가(+0.8%p)는 비대면서비스업의 고용증가(+3.0%p)가 견인하고 있다.

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이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비대면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더 크게 증가함으로서 전체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업종별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인구 집단에서 사회적 변화 및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림 6]을 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이혼 여성의 50% 이상이 대면서비스업에서 종사할 만큼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여성의 고용률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함께 도소매업의 고용이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코로나19 이후 음식숙박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고용충격이 이혼 여성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이혼 여부별 여성의 대면서비스 취업자 비중 추이(30~64세)



주: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도소매업(G), 음식숙박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R), 협회, 개인 및 기타 개인서비스(S)를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낮은 고용 안정성

이혼 여부에 따른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규직 비율과 근속기간을 살펴 보았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비중

을 30~64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이혼 당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성별과 관계없이 유배우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정규직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 당사자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자는 남녀 모두 2016년에 비해 2021년 정규직 비율이 2.9%p 감소했지만 이혼 남성은 4.3%p, 이혼 여성은 5.3%p 감소하면서 근로 안정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²⁾. 최근 이혼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늘어나고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성별, 이혼여부별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30~64세)

(단위 : %)

	2016년 8월	2017년 8월	2018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8월*
유배우자 남성	80.5	80.2	80.2	78.2	79.2	77.6
이혼 남성	57.4	65.6	62.8	59.1	54.1	53.1
유배우자 여성	59.4	59.7	60.1	57.9	58.3	56.5
이혼 여성	56.6	56.9	50.7	47.4	50.9	51.3

주 : 2019년 8월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류기준 개정을 반영하여 병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초과 관측되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근속기간(조사 연월-직장시작 연월)을 살펴보면, 30~64세 유배우자 남성은 평균적으로 9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혼 남성은 6년 이하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이혼 남성은 사회서비스업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감소했지만, 기타 산업(농업, 광업 등)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증가하고, 대면서비스업에서 1년 7개월 증가하면서 전체 근속기간이 8개월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유배우자 남성의 근속기간이 3개월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근로기간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배우자 여성은 평균적으로 6년 내외의 근속 연수, 이혼 여성은 4년 2~3개월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다. 유배우자 여성은 대면서비스업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제조업, 비대면서비스업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개선되었다. 반면, 이혼 여성은 전체 근속기간이 1개월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근속기간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에서는 2개월 증가하여 유배우자에 비해서 개선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의 근속기간은 6년 3개월에서 4년 8개월로 크게

2) 통계청은 2019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분류기준 개정안을 반영하여 수정문항을 기존 문항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고용예상기간 등 응답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 부문에 초과관측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소하였다.

2018년까지 이혼 당사자들은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이후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으나 사회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더 큰 고용률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재정사업 특성상 시간제 및 기간제 위주로 고용이 발생하면서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근속연수도 크게 감소했다. 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이에 이혼 여성은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 4〉 성별, 이혼 여부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30~64세)

(단위: 개월수)

	유배우자 남성		이혼 남성		유배우자 여성		이혼 여성	
	2016년 1~11월	2021년 1~11월						
전 산업	9년 4개월	9년 7개월	5년 1개월	5년 9개월	5년 9개월	6년 4개월	4년 2개월	4년 3개월
제조업(C), 건설업(F)	8년 3개월	8년 7개월	4년 7개월	4년 11개월	5년 3개월	6년 0개월	4년 0개월	4년 9개월
대면서비스 (G, I, R, S)	7년 4개월	7년 10개월	3년 11개월	5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8개월	2년 10개월	3년
비대면서비스 (J, K, L, M)	10년 4개월	10년 5개월	5년 7개월	7년 7개월	8년 0개월	8년 6개월	6년 3개월	6년 1개월
사회서비스 (O, P, Q)	14년 9개월	14년 8개월	10년 11개월	9년 8개월	7년 8개월	7년 3개월	6년 3개월	4년 8개월
운수창고업(H), 사업서비스(N)	6년 11개월	7년 9개월	4년 6개월	5년 2개월	3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4개월	4년 3개월
기타 산업	11년 2개월	10년 6개월	6년 12개월	9년 1개월	4년 9개월	5년 4개월	1년 0개월	2년 9개월

주: 근속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기준 조사 연월에서 임금근로자가 직장을 시작한 연월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유배우자 대비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수준

30~64세를 중심으로 이혼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임금수준이 유배우자에 비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를 통해 알아보았다(그림 7 참조). 이혼 가구는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배우자보다 근로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 8월 기준 이혼 여성의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유배우자 여성의 1.15배 수준으로 주당 약 5시간 높게 나타났다(이혼 여성 39.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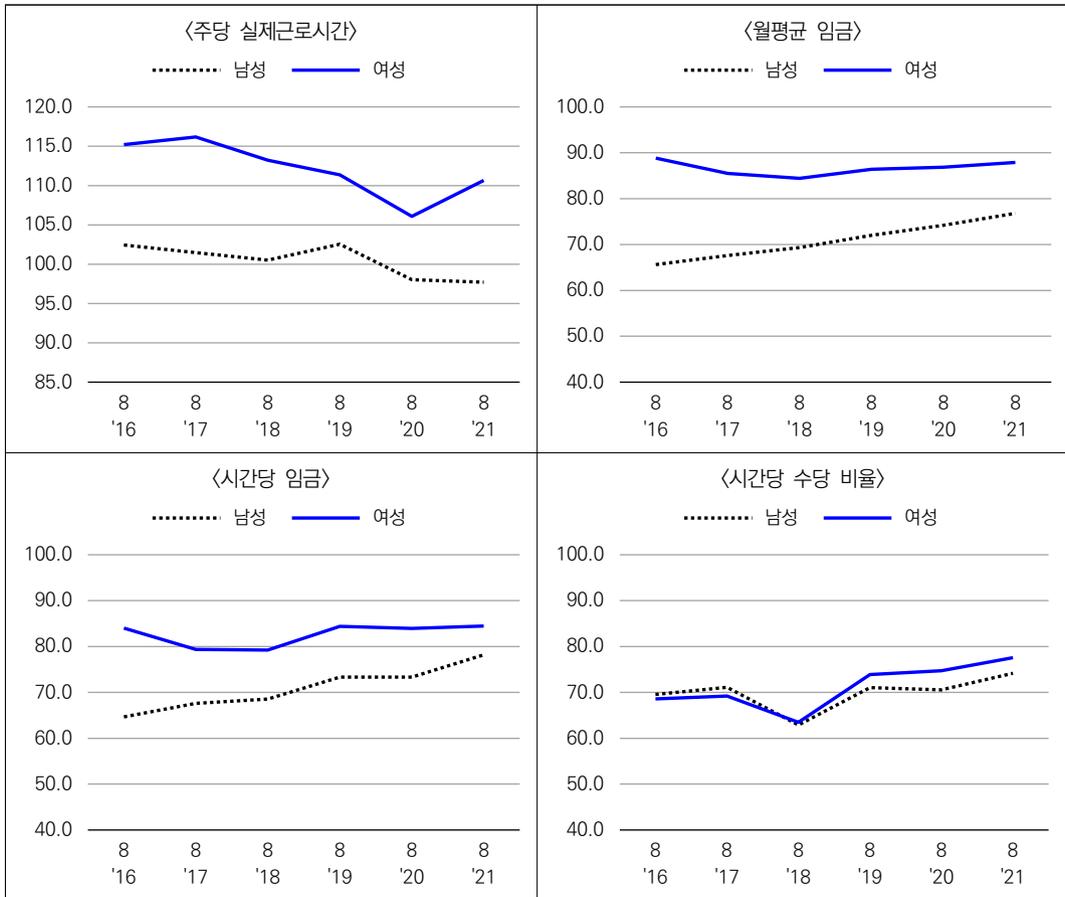
유배우자 여성 34.2시간). 이후 근로시간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2.1시간까지 감소했으나 2021년 들어 다시 3시간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유배우자와의 근로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혼 남성의 실제근로시간은 주당 42.1시간으로 유배우자 남성보다 1시간 높았다. 이혼 남성의 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면서 현재는 유배우자보다 0.9시간(이혼 남성 38.2시간, 유배우자 남성 39.1시간) 적게 일하고 있다.

임금수준은 이혼 당사자와 유배우자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남성의 경우 이혼 남성과 유배우자 남성의 근로시간이 비슷함에도 2016년 기준 유배우자 임금의 65% 수준에

[그림 7] 40~50대 유배우자 가구 대비 이혼 가구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1) 임금근로자 중 유배우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100으로 두었을 때 이혼 가구 근로조건 수준을 의미함.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실제근로시간*(30.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불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2021년에는 77%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여성은 이혼 여성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1.1배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9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2018년 84.4%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현재까지 임금격차가 1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 수준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혼 여성은 유배우자 여성의 80~85% 수준을 지난 5년간 유지하며 임금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 가구가 유배우자 가구보다 근로시간은 많지만 임금수준이 그에 못 미치는 원인 중 하나는 시간외수당을 받기 어려운 여성 근로자가 이혼 가구에 많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유배우자 여성의 시간외수당 비율은 42.3%였고 이혼 여성의 시간외수당 비율은 29%로 유배우자 100명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동안 이혼 여성은 70명 이하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었다. 2021년 유배우자의 시간외수당 비율은 47.7%, 이혼 여성은 37%로 여전히 10%p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재택근무제 시행을 늘려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에서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 근무제) 활용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남성과 여성은 2021년 8월 기준 각각 3.9%와 3.3%가 재택 및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혼 남성과 여성은 각각 1.1%, 1.8%가 활용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재택 및 원격 근로가 어려운 대면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의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 이혼 당사자가 외면받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이혼 당사자 및 이혼 가구의 동태적 소득 변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혼인상태를 통해 이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언제 이혼을 했는지,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조사연도에 혼인상태에서 이혼상태로 변화한 관측치를 식별하여 가구 구성, 소득 및 지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년, 6~9차)를 통해 조사기간 내 이혼가구로 진입한 173가구³⁾의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⁴⁾를 이혼상태(4,130가구) 및 혼인상태(27,231가구)를 유지하고 있

3) 가구의 혼인상태가 전년도에는 혼인, 현재에는 이혼인 경우를 이혼 진입 가구로 정의하였다. 조사 내에서 패널 기간 동안 가구 내에서 가구주가 변경되는 등 이혼 가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이혼 진입 가구인지 유지 가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혼 가구를 식별하였다.

4)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 B-A가 이혼 가구로 진입했을 경우

는 가구와 비교하였다. 이혼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화를 반영하여 가구원 1인당 소득 및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⁵⁾. 동일 시점의 관측치가 부족한 관계로 소득과 소비지출액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시차 변화를 제거하고 연평균 수치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혼 이후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와 남성일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혼 전의 가구상태가 맞벌이 부부인지, 외벌이 부부인지 등에 따라서 소득 및 지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였다.

〈표 5〉를 보면, 먼저 2018~20년 사이 이혼상태로 진입한 173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는 1.1명 감소하면서 가구원 1인당 평균 경상소득이 약 45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혼을 유지하거나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가 연간 80만~1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가구원 감소로 인한 소득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이혼 유지 및 혼인 유지 가구의 경우 소득증가 가운데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3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이혼 진입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에서 313만 원, 사업소득에서 66만 원 증가하여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325만 원 증가했는데, 식료품에서 105만 원 다음으로 주거비에서 86만 원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혼 진입 가구 가운데 남성 가구주의 경우 이혼으로 1.1명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0.9명⁶⁾ 감소하였다. 이혼 이후 남성 가구주의 경우 연간 561만 원의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이 이혼으로 인해서 사업에 전념하기 어려워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이 378만 원, 여성인 경우 22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이혼 이후 단독 가구원이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118가구 중 단독가구 68가구)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은 이혼 이후에도 2인 이상 가구인 경우가 절반이 넘으면서(55가구 중 33가구) 주거비보다는 식료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다음은 이혼 진입 가구 가운데 전년도 부부상태였을 당시 맞벌이로 소득활동을 했던 가구와 외벌이로 소득활동을 하였던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6 참조). 가구원 수는 남성이 1.5명,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연도	연도 범위	상태	변수	개수
2018	2018. 3. 31-7차	혼인(t-1)	소득, 지출(A)	8차
2019	2019. 3. 31-8차	혼인(t)	소득, 지출(B)	9차
2020	2020. 3. 31-9차	이혼(t+1)	소득, 지출(B)	9차

5) 일반적으로 가구단위로 작성한 소득통계를 개인단위 소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구소득에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한다(OECD 방식).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서 가구가 분할되고, 가구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6) 혼인 중 배우자와 별거 및 연락 두절이거나 복지요양시설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 이혼 후에도 가구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부모 및 형제, 자녀 가구원이 진입하면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성이 1.2명 감소하여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혼 이후 여성 쪽이 부양의무를 주로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 이혼 가구로 진입한 72가구 중에서 남성 가구주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88만 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중심으로 418만 원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이혼 이후 모두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에서 343만 원 감소하고 근로소득은 106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37만 원 감소하였다. 지출수준은 남성 및 여성 가구주 모두 경상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부담과 함께 맞벌이 부부 당시의 지출수준을 이혼 이후에도 쉽게 낮추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이혼 진입 가구의 소득 및 소득지출 변화(2018~20년 평균)

(단위: 만 원/연간, 연평균)

	이혼 진입			이혼상태 유지	혼인상태 유지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전체		
관측 가구(가구 수)	118	55	173	4,130	27,231
가구주 무직(가구 수)	21	5	26	1,106	4,930
나이(세)	52.5	52.4	52.5	55.8	54.6
가구원 수(명)	1.8	2.0	1.9	1.8	3.2
(증감, 명)	-1.1	-0.9	-1.1	-0.1	0.0
경상소득(만 원/연간)	561	232	449	101	82
근로소득	344	254	313	61	33
사업소득	136	-71	66	2	12
재산소득	38	35	37	6	14
이전소득	43	14	33	32	23
소비지출(만 원/연간)	378	226	325	37	33
식료품	114	88	105	18	13
주거비	111	39	86	2	3
교육비	14	4	10	-4	1
의료비	-21	45	2	3	5
교통, 통신비	47	25	39	3	-1
기타 소비지출	113	26	83	14	1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외벌이 부부(가)에서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 가구원 수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전체소득이 연

7) 외벌이 부부였던 이혼 진입 남성 가구주 41가구 중에서 남성 외벌이 37가구, 여성 외벌이 4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여성 가구주 17가구 중에서 남성 외벌이 11가구, 여성 외벌이 6가구가 해당된다.

간 883만 원 증가했고, 여성 가구주의 경우 312만 원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는 연간 216만 원이 증가하지만 이전소득이 58만 원 증가하여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경우 남성 가구주는 기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381만 원 증가하여 소득에 비해 낮은 소비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 가구주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지출이 356만 원 증가하여 44만 원가량의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맞벌이 여부별 이혼 진입 가구의 소득 및 소득지출 변화(2018~20년 평균)

(단위: 만 원/연간, 연평균)

	맞벌이 가구→이혼			외벌이 가구→이혼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전 체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전 체
관측 가구(가구 수)	52	20	72	41	17	58
가구주 무직(가구 수)	6	0	6	4	3	7
나이(세)	49.7	51.5	50.2	50.7	52.2	51.2
가구원 수(명)	1.6	1.9	1.7	2.1	2	2.1
(증감, 명)	-1.5	-1.2	-1.4	-1.1	-1.1	-1.1
경상소득(만 원/연간)	418	-237	239	883	312	693
근로소득	362	106	292	508	120	379
사업소득	-88	-343	-158	332	96	254
재산소득	85	-22	56	26	39	30
이전소득	59	21	48	17	58	30
소비지출(만 원/연간)	483	259	435	381	356	371
식료품	162	96	148	83	147	109
주거비	171	95	155	61	35	51
교육비	29	31	29	24	20	22
의료비	-15	25	-6	-1	20	8
교통, 통신비	50	-11	37	62	86	71
기타 소비지출	87	22	73	152	48	11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혼으로 인해서 가구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혼인상태이지만 별거 및 연락 두절 상태로 배우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이혼 전후로 가구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이혼 후 부모, 형제 및 자녀가 가구원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 각각의 경우를 분류하여 분석하기에는 이혼 가구 표본수가 부족하였다. 무엇보다 별거, 이혼으로 인해서 가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리된 가구 각각에 대한 추적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변화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V. 맺음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위기가 가정 내 어려움으로 번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와 같이 장기휴직과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이혼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2020년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 및 남성 이혼 당사자의 현황과 최근 5년 사이의 노동시장 특징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거에는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이 주로 나타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동거기간이 긴 중고령층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적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내 이혼상태의 생산가능인구가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 당사자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혼 여성의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업종의 성장 둔화로 2018년부터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확산 1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배우자 남성 및 여성, 이혼 남성의 고용은 회복되었지만 이혼 여성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혼 여성의 고용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사업 특성상 시간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많고, 근속기간이 짧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위험에 놓여있다. 이혼 남성은 유배우자 남성과 근로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임금은 유배우자의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그 격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유배우자보다 1.1배 이상 근로시간이 많지만 임금수준은 90% 미만 수준에 머문 현실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이혼에 진입한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혼 남성은 홀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주거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이혼 여성은 이혼 후 2인 이상의 가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식료품비, 의료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사업 소득은 감소하면서 지출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5년 사이에 이혼 당사자의 노동시장 상황은 유배우자에 비해서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혼 남성의 경우 점차 유배우자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 여성은 훨씬 열악해진 실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혼 남성 및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배우자 가구와의 단편적인 통계적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혼 당사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시장의 원인을 이혼 당사자에 대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 그리고 개인 및 직업적 특성, 이질성에 의한 차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혼 가구의 경제적 실태를 폭넓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 변화, 소득, 지출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녀 이혼 당사자를 각각 장시간 관찰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혼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자와 정책관계자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KL